

학사단위구조개편 및 정원관리 규정

(제정 2010. 10. 26.)

(제명변경 2017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학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사단위구조개편 및 정원관리(이하 “학사단위구조개편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사단위”란 입학정원을 갖는 대학원, 단과대학, 학과 등을 말한다.
2. “구조개편”이란 학사단위의 신설, 폐지, 통합, 명칭변경 및 이동 등을 말한다.
3. “정원관리”란 본교의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사단위별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관리정원”이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사단위구조개편 주관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입학정원을 말한다. <신설 2018.12.1.>

제3조(기본방향) 학사단위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구현
2. 대학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실현
3. 산업환경 및 인력수요 전망 등 여건 분석 및 반영
4. 대·내외 의견 수렴 및 반영
5. 정부의 학생 정원관리 정책 준수
6.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화

제4조(주관부서) 학사단위구조개편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8.12.1.>

제2장 절차 및 방법

제5조(절차) 학사단위구조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며,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학사단위구조개편 계획 수립
2. 대·내외 의견 접수 및 심의
3. 학사단위구조개편 기준을 위한 학과 평가 및 구조개편안 도출 <개정 2018.12.1.>

제6조(계획 수립) ① 기획처장은 제3조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학사단위구조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사단위구조개편 추진계획은 학사단위구조개편의 목적,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 구성, 추진

일정, 학과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견 수렴) ① 학사단위구조개편을 희망하는 학사단위는 소속교원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학사단위구조개편 신청서를 기획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교직원, 학생, 학부모, 산업체 등에 대하여 학사단위가 신청한 구조개편에 관한 의견을 공문, 우편, 그룹웨어 등으로 수렴할 수 있다.

제8조(학과평가) 학사단위구조개편을 위한 학과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학과평가 및 정원조정 운영지침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12.1.>

제9조(안전 심의 및 승인) ① 기획처장은 학사단위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처장은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사단위구조개편안에 대하여 교무처장에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사단위구조개편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장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

제10조(설치) 학사단위구조개편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·심의하기 위하여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·심의한다.

1. 구조개편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사단위구조개편 대상에 따라 학부는 학부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와 대학원은 대학원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학부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는 부총장, 학장, 교육혁신본부장, 선교봉사처장, 교무처장, 학생취업처장, 입학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그리고 교수회에서 추천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2. 대학원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는 부총장, 각 대학원장,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, 기획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, 기획예산실장을 간사로,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.

제13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할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

제1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7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